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홍익표·김수흥·홍성국

정필모 · 송재호 · 김성주

백혜련 • 이원욱 • 이장섭

전용기 · 이형석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·중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. 이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신중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

그런데 실제 통합·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학교를 통합·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,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·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법률 제 호

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기준 및 교원배치기준"을 "기준, 교원배치기준, 의견 수렴 절차,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및 결과 공개"로 한다.

-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·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학	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-
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	
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	
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	
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	
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	
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	
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u>&lt;후단</u>	
<u>신설&gt;</u>	<u>이 경우 해당</u>
	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
	을 수렴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
	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
	•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
	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인터넷
	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$\underline{2}$ 제 $1$ 항에 따라 통합·운영하	<u>③</u>
는 학교의 시설·설비 <u>기준 및</u>	<u>7]</u>
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	준, 교원배치기준, 의견 수렴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절차,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
	실시 기준 및 결과 공개